본 내용은 2025년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잘 알아야 합니다. 수입이 생길 때,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기타 각종 경제 활동에 세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알아야 할 것이 많아 어려움을 느끼기 쉬운데 그 이유는 단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많은데 이것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세법을 알기 위해서는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 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법의 구조와 세법적용 원칙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법의 구조(종류) >

법인세법

- 법인의 소득에 관련된 세법

소득세법

- 개인의 소득에 관련된 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세법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법 -

지방세법

- 지방세와 관련된 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종부세와 관련된 세법 -

관세법

- 관세와 관련된 세법 -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와 관련된 세법 -

기타 여러 세번 존재

세법을 적용하는 사례(예시 :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서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차익(이자)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가 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법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도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같은 종류의 소득이 생겼다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소득인지? 소득을 얻은 것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법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원칙 >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2가지를 소개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과세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식상의 주인이 있더라도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면 실제 주인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질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형식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뜻하지 않은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세법은 소급해서 과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과거 거래 당시에 적용된 세법과 현재의 세법이 다른 경우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세법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